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1013호 2018. 4. 6.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46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93호 가곡온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296호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계약체결 공고 ---------- 23

○ 삼척시 공고 제301호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8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46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06.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53-5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4.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51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53-5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25-1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27-11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4-48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도로명(진주로)명칭활용(기존도로명)	
5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4-52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도로명(진주로)명칭활용(기존도로명)	
6		이	하	여	백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 계	도로명주소 / 5 건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51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53-5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25-1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27-11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4-48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도로명(진주로)명칭활용(기존도로명)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4-52 (남양동)	폐지	20180406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도로명(진주로)명칭활용(기존도로명)	

삼척시 공고 제2018 - 293호

가곡온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온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삼 척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가곡온천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
 나.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09-3번지 일원
 다. 면 적 : 16,485㎡
 라.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마. 시 행 자 : 삼척시장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8. 4. 5. ~ 2018. 4. 28.
 나. 장 소 :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가곡면사무소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8. 4. 24(수), 14:00
 나. 장 소 : 가곡면사무소 회의실(2층)

4.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 초안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면 제출
 다. 제출내용 : 개발계획 등에 대한 의견,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저감 방안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관광정책과(☎033-570-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곡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생활, 건강 및 휴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관광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온천이용인구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곡온천을 개발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조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신리 너와마을, 백병산 동활계곡, 응봉산 덕풍계곡, 가곡자연휴양림 등 천혜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가곡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한편, 본 가곡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2. 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카. 관광단지의 개발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 전
	·전체면적 : 16,485㎡ (계획관리지역)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3 계획의 내용

가. 사 업 명 : 가곡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

나.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09-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규모)

○부지면적 : 16,485㎡

○주요시설 :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온천시설

-관광휴양시설용지(온천장) : 711㎡(4.3%)

-공공시설용지(도로·주차장) : 5,578㎡(33.8%)

-녹지용지 : 10,196㎡(61.9%)

라.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마. 승인기관 : 강원도

바. 사업기간 : 2017.01. ~2019.12.

사. 사업비 : 약 4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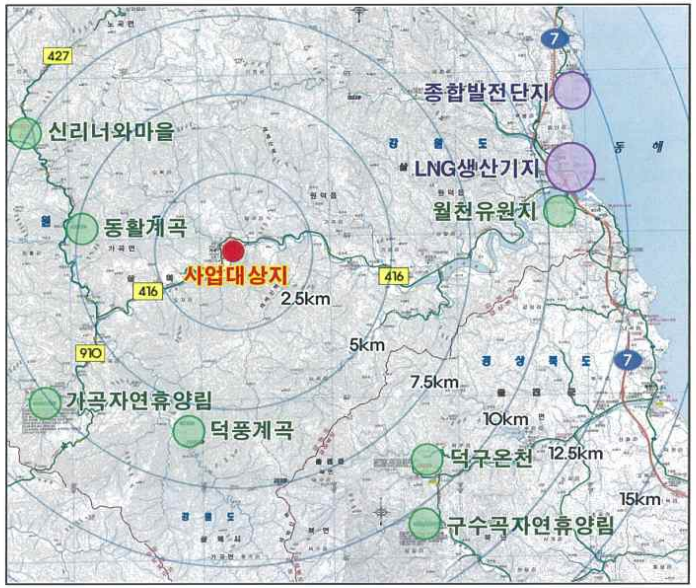

(그림 1-1) 계획부지 위치도

○ 온천공 현황

구 분		내 용
위 치		가곡면 탕곡리 509-3번지 일원
수 위 강 하		27.45m
굴 착 심 도		804.0m
용 출 온 도		32.8℃
1일 적정양수량		812㎥/일
수 질	수질유형	$Na-HCO_3$형(단순천)
	pH	9.86(알칼리성)
	성 분	유황성분 함량(3.18mg/L)

(그림 1-2) 계획지구 전경사진

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6,485	100.0	
관광휴양 시설용지	종 합 온 천 장	711	4.3	
공공시설용지	소 계	5,578	33.8	
	도 로	3,157	19.1	
	주 차 장	2,421	14.7	
	오 수 처 리 시 설	-	-	
녹지용지	소 계	10,196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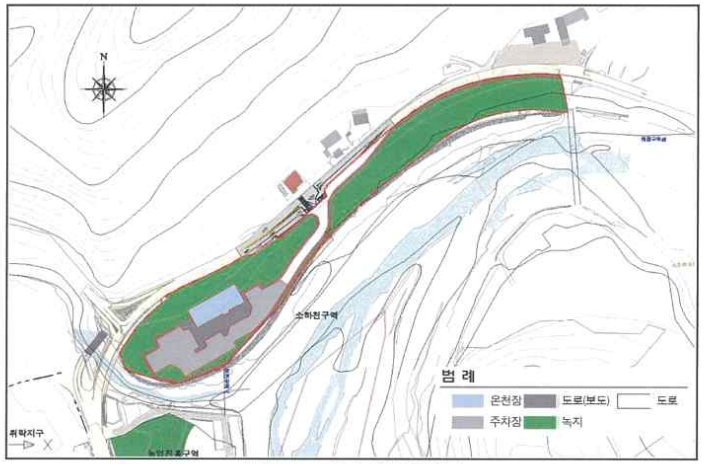

(그림 1-3) 토지이용계획도

자. 시설물배치계획

- 건축계획(설계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대지위치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09-3번지 일원	
대지면적	16,478㎡	
지역지구 / 용도	계획관리지역 / 온천시설	
도 로	북측 12m	
규모 / 구조 / 높이	지상3층 / 철근콘크리트 구조 / 16m	
주차대수	일반 41대 / 장애인 4대 / 버스 4대	

구 분	면적 및 규모(㎡)	주요 도입 시설
관광휴양시설	2,141.59	-
지상1층	725.11	기계 / 전기 / 물탱크 / 펌프 / 보일러 / 오수처리시설
지상2층	520.67	카페 / 지역특산물 판매소 / 홀
지상3층	895.81	온천시설 / 탈의실 / 노천탕 / 매표소
건축면적	1,174.34	-
용적률 연면적	1,653.40	기계실 / 전기실 제외
건폐율 / 용적율	7.12% / 1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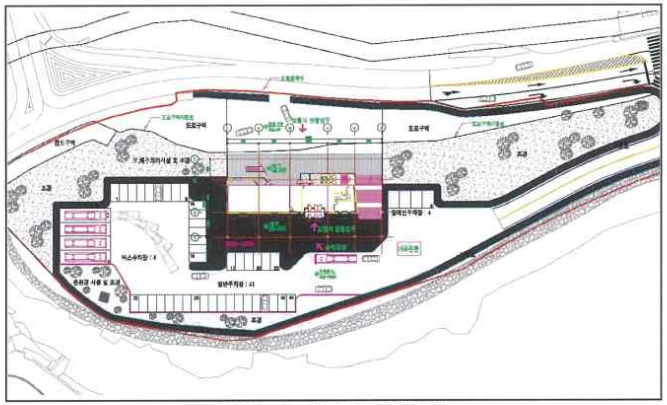

(그림 1-4) 건축시설물배치계획도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계획의 추진경위

- ○2012. 07 : 온천공검사 실시(중앙컨설턴트주식회사)
- ○2012. 10 : 가곡온천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3. 12 : 온천발견신고
- ○2014. 06 : 가곡온천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착수
- ○2017.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 ○2017. 09. 29 : 온천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10. 26 ~ 11.08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나. 계획의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02~03월 : 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 ○2018년 04월 : 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18년 06~0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1.5 계획의 기대효과

- ○가곡온천을 개발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조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대상지와 인접한 신리 너와마을, 백병산 동활계곡, 응봉산 덕풍계곡, 가곡자연휴양림 등 천혜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코스로 개발

제2장 지역개황

<표 2-1>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

환경관련지역·지구		삼척시	계획부지	비 고
환경보전용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	×	5개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	-
	수변구역	×	×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	-
	대기환경규제지역	×	×	-
	대기관리권역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
	자연공원	○	×	대이리 군립공원 약 25.3km 이격
	습지보호지역	○	×	-
	야생생물 보호구역	○	×	2개소 각각 27.5km, 32.5km 이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34개소 위치, 최소 4.5km이상 이격
	백두대간보호지역	○	×	육백지맥 약 3.6km 이격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 특별관리)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
	악취관리지역	×	×	-
	생태·자연도	○	△	북측 1등급 인접 계획부지 3등급 지역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	○	○	계획부지는 "청정"지역임
	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0.1%이하 경유, 0.5%이하 중유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	×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	×	-
주요보호대상시설물	취수장	○	×	-
	정수장	○	×	-
	문화재	○	×	-
	천연기념물	○	×	-

주) ○ : 해당(영향 있음), △ : 해당(영향 없음 또는 미미함), × : 해당 없음(영향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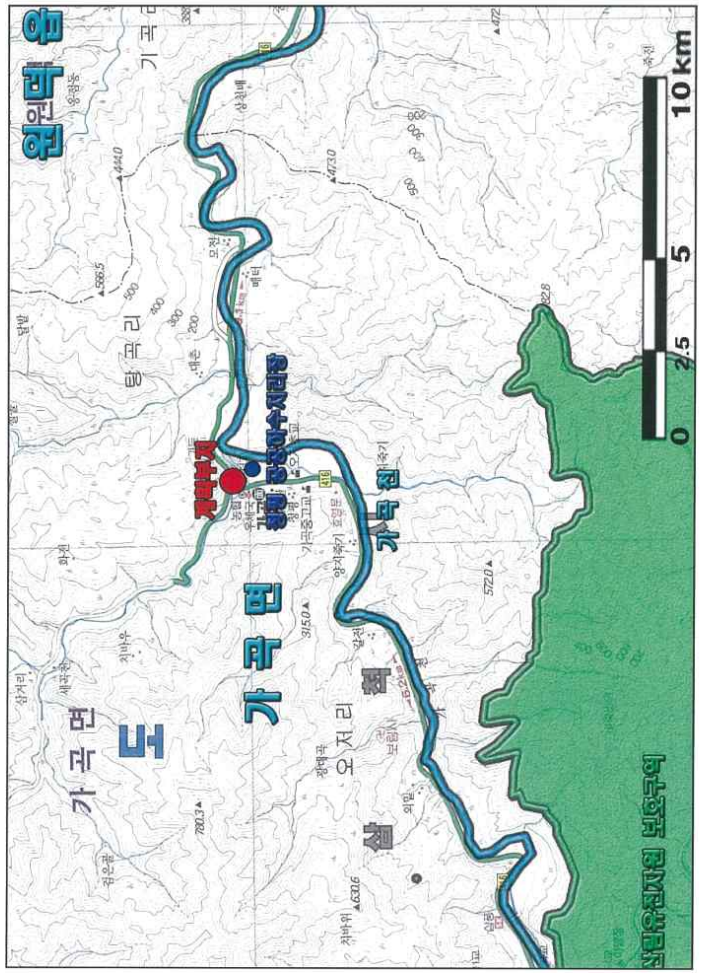

(그림 2-1) 지역개황도

제3장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3.1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현 황	○육상식물상 -총 35과 73속 75종 10변종 총 85분류군 -법정보호종은 관찰되지 않음 ○육상동물상 -포유류 : 6과 6종10종(너구리 등) -조류 : 17과 17종 201개체(참새 등) -양서·파충류 : 총 5과 5종(옴개구리 등) -육상곤충 : 7목 12과 19종(잠자리목 등) ○육수동물상 -수생식물 : 총 22과 46종 -부착조류 : 3강 16속 33종 -담수무척추동물 : 2목 3강 9목 16과 20종 -어류 : 6과 6종 33.5개체 ○법정보호종 -문헌 : 수달(멸종 Ⅰ급), 삵(멸종 Ⅱ급), 참매(멸종 Ⅱ급) -현지조사시 출현하지 않았음.
	영향예측·평가	○육상식물상 -계획지구는 식물다양성이 낮은 지역(경작지, 나지 분포)으로 식물상 영향 미미 ○육상동물상 **-주변의 유사 외부지역이나 산림 안쪽으로 이동** ○육수동물상 -공사시 절·성토 공정에 따른 토사 하천유입 우려 -운영시 배출되는 온천수의 영향으로 생물군집에 영향 예상 ○법정보호종 -가곡천을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수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저감방안	○육상식물상 -적절한 시기에 귀화식물 제거 ○육상동물상 -공사시 저소음·저진동 공법이용 등 환경저해요소 감소 -운영시 운천배수를 처리 후 방류하여 수환경의 변화 억제 예정 ○육수동물상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막등을 설치할 예정 -온천수는 저류 및 화학적 처리공정을 거친후 방류하여 수환경 변화 최소화 ○법정보호종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시 인부 사전교육 실시 등으로 서식환경의 파괴 등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영향예측 및 지감방안	○본 계획부지(가곡온천공)은 특별한 자연환경자산이 위치하고 있지는 않음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오탁방지막 설치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시행, 주요 활동시간대 공사 지양 등 수달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또는 서식 종 등의 자연환경자산을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 수립 후 시행할 계획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현 황	○표고분석 -평균표고는 104.7m, 100 ~ 110m가 13,960㎡로 전체면적의 84.7% 차지 -최저표고 약 97.7m, 최고표고 약 112.9m ○경사분석 -경사도 15% 미만지역이 전체면적 71.0%(10,756㎡) 분포 -평균경사도 12.5%, 최고경사도 53.4%, 최저경사도 0.0% ○지 질 -선캠브리아기의 율리층, 홍제사화강과 백악기의 흥전층, 산성 화산암류, 산성 및 염기성 암맥이 구성암석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제4기에 속하는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음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부지 북측에 육백지맥의 분지맥이 약 3.6km 이격하여 위치함 ○특이지형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분포 현황 없음
	영향예측·평가	○계획지구는 평탄한 완경사의 지형으로 지형변화는 미미함 ○토공계획 -절토량 4,216㎥, 성토량 6,741㎥, **부족토량** 2,525㎥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저감방안	○사면보호공법 -현지 자생수종을 이용한 친환경적 사면보호공법 및 식생복원 계획 수립 ○토공처리계획 -공사시 계획부지 내부에서 유·출입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부족토량의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활용 ○토사유출 저감대책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계획 수립 -법면녹화 조기시행 및 절·성토면 안정화작업 우선시행(다짐철저)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시설(측구수로 등) 조기 설치 -공사시 가배수로 종단지부에 침사지 설치 ○공사시 발생사면은 절토의 경우 1:1, 성토의 경우 1:1.5이상의 구배 계획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현 황	○ 경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계획부지 북서측 약 26.6km 이격하여 대이리군립공원 위치 ○ 위락 -공원현황 : 자연공원 1개소, 도시공원 53개소(어린이공원 25개소, 근린공원 24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공원 1개소) 분포 -문화공간 : 공연시설 1개소, 전시시설 4개소, 기타시설 1개소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로 경관의 변화가 예상 ○ 계획부지 인근 주거지, 상업시설, 도로, 농경지 등에서 계획부지 내 건축물들이 조망됨 ○ 계획시행 시 주변 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의 높이와 형태, 색채 등을 계획 ○ 계획부지 경계로 녹지 조성

수환경의 보전

수질	현 황	○ 수계 현황 -계획 대상지는 지방하천인 가곡천과 접한 지역으로 가곡천은 지방도 416호선을 따라 동해로 유입 ○ 상수원보호구역, 취·정수장 입지하지 않음 ○ 지표수질 측정결과(Ia~II등급 분포) -pH : 7.3~7.6, -BOD : 0.8~1.1mg/L -SS : 0.2~1.0mg/L -DO : 8.1~8.8mg/L -BOD 기준 매우 좋음(Ia) 등급~좋음(Ib) 등급으로 조사 ○ 온천수 양수량 : 812㎥/일(유황온천)
	영향예측·평가	○ 공사시 -우수유출량 : 0.134㎥/sec -토사유출량 : 7.604톤/일 - 오수발생량 : 7.41㎥/일 ○ 운영시 -계획급수량 : 299.5㎥/일 -온천수 공급량 : 350.0㎥/일 -오수발생량(건축물 용도별) : 64.67㎥/일
	저감방안	○ 공사시 -우기 및 장마철 공사지양 -공사시 우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 운영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투수블럭포장 : 주차장, 보도 등

3.2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현 황	○ 대기질 측정결과 -SO_2 0.003~0.003ppm -CO 0.3~0.3ppm -NO_2 0.015~0.018ppm -PM-10 22.7~27.4㎍/㎥ -PM-2.5 16.3~20.2㎍/㎥ -O_3 0.017~0.018ppm -Pb 0.020~0.023㎍/㎥ -벤젠 불검출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함
	영향예측	○ 공사시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 PM-10 : 0.0875g/sec · PM-2.5 : 0.0389g/sec · NO_2 : 0.4682g/sec -영향예측지점별 농도 · PM-10 23.14~ 31.23㎍/㎥ · PM-2.5 16.46~21.36㎍/㎥ · NO_2 15.23~20.04ppb -전 지점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함
	저감방안	○ 살수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운영 ○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 ○ 비산 방진망 설치계획 ○ 공사장비의 효율적 투입 및 공회전 금지
토양	현황	○ 토양 측정결과 -Cu 5.048~25.584㎎/㎏ -As 3.528~5.604㎎/㎏ -Pb 14.429~21.385㎎/㎏ -Ni 3.343~6.673㎎/㎏ -Zn 62.135~92.104㎎/㎏ -F 140.941~158.808㎎/㎏ -그 외의 항목은 불검출
	영향예측·평가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 공사시 투입인원에 따른 분뇨 및 생활폐기물 발생
	저감방안	○ 장비가동에 따른 폐유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투입인원에 따른 발생 분뇨 및 생활폐기물은 적정처리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현 황	○소음·진동 현황 -소음 : 소음환경기준 다소 초과 · 주간 : 50.8~58.4dB(A) · 야간 : 35.5~39.6dB(A) -진동 : 전 지점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 주간 : 25.8~31.6dB(V) · 야간 : 15.4~16.8dB(V)
	영향예측·평가	○소음·진동 예측결과 -소음도 예측결과 46.1~70.6dB(A)로 AR-3, 6지점이 환경기준 초과 · 소방서 및 가옥 : 70.6dB(A) · 덕풍계곡 행복문화센터 : 66.1dB(A) · 기타 정온시설 : 44.6~62.6dB(A) -진동도 예측결과는 전 지점에서 환경기준을 만족
	저감방안	○공사시 -공사장내 공사차량 주행속도 20㎞/hr 이내로 제한 -심야 및 조·석간 작업 금지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 -저소음 공법 적용 및 저소음 건설기계 선택 사용 -가설방음판넬 설치(H=3m) -작업시간 조절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현 황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5개소, 분뇨처리시설 현황 1개소, 매립시설 4개소가 삼척시 관내에 입지하고 있음. ○삼척시 관내에는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이 6개소가 입지하고 있음.
	영향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 매립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6개소 운영중임 ○계획부지 인근에 청평하수처리장(시설용량 : 60㎥/일)이 운영중이나, 가곡온천 개발시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신규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임.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등은 삼척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현 황	○생활폐기물(가정+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 108.8ton/일 ○가정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량 : 1.390kg/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 : 11.1ton/일 ○분뇨발생량 : 66.0ton/일
	영향예측·평가	○공사시 -폐유 발생량 : 6.87L/일 -투입인력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생활폐기물 18.90kg/일 · 분뇨 발생량 12.42L/일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 : 총 986.39kg/일
	저감방안	○공사시 -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폐유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운영시 · 삼척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생활폐기물 성상별로 분리수거 · 음식물류는 별도의 보관용기 설치하여 운영 · 재활용품은 전문업체 위탁처리

3.3 사회 ·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현 황	○토지이용현황 -총면적 16,485㎡ 중 하천이 전체 면적의 35.6% 차지, 도로 29.8%, 답 18.2%, 구거 11.2%, 대 5.1% 순으로 나타남 -소유자별로는 국유지 73.5%(12,112㎡), 공유지 26.1%(4,310㎡)
	영향예측·평가 저감방안	○토지이용계획 -총 계 : 16,485㎡(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 711㎡(4.3%) -공공시설용지 : 5,578㎡(33.8%) -녹지용지 : 10,196㎡(61.9%) ○건축시설 설계개요 -지역지구 / 용도 : 계획관리지역 / 온천시설 -규모 / 구조 / 높이 : 지상3층 / 철근콘크리트 구조 / 16m -주차대수 : 일반 41대 / 장애인 4대 / 버스 4대 -건축면적 : 1,174.34㎡ -건축연면적(용적율 산정) : 2,141.59㎡(1,653.40㎡) -건폐율(용적율) : 7.12%(10.0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인구·주거	현 황	○삼척시 인구(2015년 기준) : 34,601가구 71,534명으로 세대당 인구 2.01인/가구 ○삼척시 유료관광지 방문객수중 내국인 1,649,787명(99.6%)이며, 외국인은 5,809명(0.4%)
	영향예측·평가 저감방안	○관광객 수요추정 -관광권역내 관광수요 분담율에 의한 추정 ·연간 이용객 : 51,422인/년 ·일최대이용객: 514인/일 -온천수 이용가능량에 의한 추정 ·연간 이용객 : 228,000인/년 ·일최대이용객 : 2,600인/년 -이용가능량(평균)에 의한 추정 ·연간 이용객 : 140,000인/년 ·일최대이용객 : 1,400인/년 ○계획이용객수 추정

구 분	계획인원(인)	비 고
연간 이용객(인)	약 140,000	
최대일이용객(인)	약 1,400	연간 이용객×최대일률(1/100)
최대시이용객(인)	약 870	최대일이용객×회전율(0.62)

○종업원계획 : 9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가곡온천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및 소규모 온천개발	
사업장 위치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09-3번지 일원	
사업자	삼척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297㎜[백상지 80g/㎡]

삼척시 공고 제2018 - 296호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계약체결 공고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562호, 2015. 4. 27)』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삼 척 시 장

1. 관리대행 목적 :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도모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가. 내용

1) 공공부문 업무의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 도모

2)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3)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시설과 장비,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적극 활용한 효율적·경제적 시설 운영

나. 범위

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 29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 5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미만) : 18개소
- 분뇨처리장(70톤/일) : 1개소
- 중계펌프장 : 1개소
- 빗물펌프장 : 4개소

2) 차집관로 관리 : 63.67km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관리대행기간 : 2018. 4. 1. ~ 2023. 3. 31. (5년)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도급사

1) 업체명 및 대표자: 환경시설관리(주), 임추섭

2)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

나. 공동도급사

1) 업체명 및 대표자: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 이군학

2) 소재지: 삼척시 척주로 65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 방안

- 매년 예산(시비) 확보

붙임 관리대행 범위 1부. 끝.

【붙임】

【관리대행 범위】

1) 공공하수처리시설(5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비 고 차집관로(Km)
공공하수처리시설 (5)	삼척	삼척시 동해대로 3830-15	25,000	- DeNipho공법 -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6.5
	도계	도계읍 강원남부로 1895	6,300	SBR(ICEAS)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12.1
	임원	원덕읍 삼척로 1266-6	800	SBR(ICEAS) -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중계펌프장 5개소포함
	호산	원덕읍 삼척로 550	900	SBR(ICEAS) -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중계펌프장 4개소포함
	근덕	근덕면 하맹방리 496	1,600	SBR(ICEAS) -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중계펌프장 6개소포함 (관거중계펌프8개소)

2) 중계펌프장 및 분뇨처리시설(2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비 고 차집관로(Km)
갈천중계펌프장 (1)	삼척시 갈천동 23-1	2,400	삼척공공하수처리장 압송	압송관로 1.7
도계분뇨처리장 (1)	도계읍 늑구리2길18-127	70	1차처리후 도계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압송관로 0.58

3)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빗물펌프장(22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톤/일)	처 리 공 법	차집관로 (Km)
소규모하수도시설 (18)	소계	18 개소			
	고사	도계읍 고사리 66-2	200	접촉산화법	중계펌프장 1개소
	월천	원덕읍 월천리 235-1	70	SBF	
	갈남1	원덕읍 갈남리 13-2	50	JASSFR공법	중계펌프장 1개소
	갈남2	원덕읍 갈남리 527-1임	100	공사중	
	산양1	원덕읍 산양1리	40	ESSA공법	
	원평	근덕면 매원리 741	70(증10)	KM-SBR공법(당초SBR)	중계펌프장 6개소
	장호	근덕면 장호리 3-28	170	침지형 분리막법	중계펌프장 2개소
	선흥	근덕면 궁촌리 1023-15	70	BSTS - Ⅱ	중계펌프장 1개소
	용화	근덕면 용화리 227-7	100	CASS SBR 순환식식활성슬러지법	중계펌프장 2개소
	초곡	근덕면 초곡리 254-1	60	JASSFR공법	중계펌프장 3개소
	광동	하장면 백두대간로 2557-14	130(60증)	BBF-DNS공법	중계펌프장 3개소
	미로	미로면 적벽길 118	150(70증)	SBR 변형회분식활성슬러지법	
	골말	미로면 하거노리 285-1	33(27감)	CMBR	
	고천	미로면 고천리 670-11	50	KM - SBR	중계펌프장 1개소
	청평	가곡면 오저리 7	60(12증)	MH 자연정화법	
	풍곡	가곡면 풍곡리 579-16	40(20감)	MH 자연정화법	중계펌프장 2개소
	고무릉	신기면 고무릉리 312-11	30	MH 자연정화법	중계펌프장 1개소
	증산	증산동 167	60	SBR 변형회분식활성슬러지법	
빗물펌프장 (4)	소계	4 개소			
	시가지	남양동 55-119	8,401	수전용량 6,000kW	
	사직	사직동 425-17	4,720	수전용량 5,000kW	
	읍상	성내동4, 5통 일원	362	수전용량 400kW	
	호산	호산리 144-2	1,500	수전용량 350kW	

4) 차집관로 현황

구 분	차집관로(㎞)	비 고
계	63.67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6.58	
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12.60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3.60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77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9.8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32	

삼척시 공고 제2018-301호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제21조3항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법 제4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삼척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

1)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평생교육지원센터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4항, 제18조)

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근거 추가
(안 제2조 5호 및 제5조 2항, 제15조)

3) 평생학습관의 업무에 “법제21조3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를 추가(안 제16조 제1항 제10호)

4) 평생학습센터 업무 수행범위 추가(안 제16조 제2항 제1~4호)

5) 평생학습센터 관리운영과 운영요원 배치 근거 추가(안 제19조, 제20조)

6) 평생교육법 제4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운영협의회 조항을 삭제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중복기능 해소와 유사 위원회 정비(안 제14조)

나.『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1) 평생교육과로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학습관장, 관장”을 “시장”으로 수정(안 제4조, 제4조 제4항,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호 및 제3호)

2) 조례 제14조 항목 삭제에 따라 연계조항 삭제(안 제19조~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24 삼척시 청석로 3길 16-41(교동)
삼척시 평생교육과(평생학습관 1층)

■ 전 화 : (033) 570-4432, 4434 ■ FAX : (033) 572-2025

4. 참고사항

가. 붙임문서

-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각 1부.

나.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 ·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제공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지정 운영) 시장은 법제21조, 제21조3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제21조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시설물 유지관리

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4.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평생학습축제)”를 “(평생학습박람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축제”를 “평생학습박람회”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관리운영)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요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평생학습지원센터"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5."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제공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학습자 안전 보험 가입) ① (생략)	제5조 (학습자 안전 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4조 (평생교육운영협의회) 시장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구축 등에 관하여 평생교육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목적) 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	제15조(평생학습관등의 설치·지정 운영) 시장은 법제21조, 제21조3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업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법제21조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시설물 유지관리 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4.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평생학습축제) 시장은 법제9조에 의거 평생교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박람회) ---------- 평생학습박람회----------.
제18조(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내에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9조(관리운영)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운영요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19조·제20조 (생 략)	제21조·제22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붙임2]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습관장(이하 "관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학습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강신청)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따라 수강신청서를 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 삼척시장 (이하 "시장"----------.
제6조 (수강생의 의무 등) ① ~ ③ (생 략) ④ 관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수강생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
제8조 (소지물의 반입제한) 관장은 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소지물의 반입제한) 시장----------.
제10조(강사의 관리) 학습관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이력카드를 학습관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의 관리) 시장----------.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관장은 제 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 ----------.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3.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 시장----------.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9조(평생학습지원센터 조직 구성) 조례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20조(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 등 평생교육원 대표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자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삭 제>
제21조(위촉 및 위촉 해제 등) ① 센터장은 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보수 등의 지급) ① 센터장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평생교육운영협의회기능) 평생교육운영협의회는(이하“운영협의회”	<삭 제>

라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운영협의회구성 및 임기)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삭 제>
제25조(운영협의회 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6조(운영협의회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7조(운영협의회 위원수당 등)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붙임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례제명 :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연락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례제명 :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연락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